

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

(권수정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647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8월 11일

발 의 자 : 권수정, 고병국, 김 경,
김경영, 김경우, 김상진,
김소양, 김제리, 박기열,
박기재, 서윤기, 이병도,
이준형, 임종국, 채유미
의원(15명)

1. 제안이유

-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집단면역 형성이 시급한 실정이
나, 공공기관 또는 대기업에 비해 자영업자, 일용 근로자, 특수형태근
로 종사자 등은 예방접종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임.
- 이에 생활이 어려운 취약 근로자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하여 코
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열·통증·혈전증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더
라도 유급병가를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유급병가 지원대상자에 '1회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자'를
추가하여 규정함. (안 제4조제3항 신설)
- 나. 코로나19 예방접종자의 유급병가 지원신청 시 제출 서류에 관하여
규정함. (안 제5조제4항 신설)

3. 참고사항
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1회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자에 대하여 유급병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제4조제3항에 따른 유급병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급병가 한시적 지원 및 적용기간 특례) ①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4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유급병가지원은 이 규정을 공포한 날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회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한다.

② 1회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자의 유급병가 지원기간은 제4조에 따른 연 최대 14일 이내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지원대상자와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 등) ①·②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4조(지원대상자와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「<u>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</u>」에 따라 1회 이상 <u>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자</u>에 대하여 유급병가를 지원할 수 있다.</p>
<p>제5조(지원신청 및 지원결정) ① ~ ③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5조(지원신청 및 지원결정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제4조제3항에 따른 유급병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

문서번호	2021081100000008
------	------------------

비용추계서

요청인 : 권수정 의원	담당 : 조도형 과장 이원상 팀장 이혜린 예산분석관
접수일 : 2021.08.11	
회신일 : 직접입력	내용문의 : 02-2180-7955

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목 차

- I. 비용추계 요약
- 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제3항에서 유급 병가 지원대상자에 ‘1회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자’ 를 추가하여 규정 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
※제5조제4항은 코로나19 예방접종자의 유급병가 지원신청 시 제출서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나, 이는 비용을 수반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제외함

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대상

- 1회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자에게 지원하는 유급병가비용

나. 전제

- 서울시의 경우 1회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자는 4,010,500 명으로, 유급병가지원을 위해 현행 조례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인 중위소득 100%이하인 사람을 산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곤란한바,
서울시 시민건강국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검진신청 월평균 인원의 2배를 기준으로 동 조례의 유급병가지원 대상자 수를 약15,000명으로 책정하고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
- 신청대비 적합승인률을 86.8%로 적용하고 근거 조례 개정 이후 적용될 것으로 가정하여 50%적용
- 2021년 서울시 생활임금 1일 85,610원을 적용하여 추계
- 물가상승률 미반영

다. 추계기간

- 코로나 19 예방접종 완료 기간을 고려하여 1년으로 추계

라. 방법

- 서울시 시민건강국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추계

3. 비용추계의 결과

○ 총 비용 ≙ 557,321천원

= 15,000명(대상자)*85,610원*86.8%(적합 승인률)*50%

(조례 개정 이후 적용)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연도					합계
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
세입	-	-	-	-	-	-	-
	소계(a)	-	-	-	-	-	-
세출	유급평가비용 (제4조제3항)	557,321	-	-	-	-	557,321
	소계(b)	557,321	-	-	-	-	557,321
□ 총 비용(b-a)		557,321	-	-	-	-	557,321

4. 덧붙이는 의견 : 없음

5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조도형

추계세제팀장 이원상

주 무 관 이해린

☎ 02-2180-7955

e-mail : lovelyynn91@seoul.go.kr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비용요소

- 1회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자에게 지원하는 유급병가비용

2. 세부추계내역 ≙ 557,321천원

$$= 15,000\text{명(대상자)} * 85,610\text{원} * 86.8\%(적합\ 승인률) * 50\%$$

(조례 개정 이후 적용)

※유급병가비는 2021년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서울시 생활임금을 준용하여 추계

참고) 코로나19 예방접종자 유급병가지원 비용추계(안)

산출액(백만원)	대상자(명)	산출기초
5억5천8백만원	약 1만 5천명 ※ 기 검진자 신청으로 추정	15,000명(대상자) × (1일 × 85,610원) × 86.8%(적합 승인률) × 50%(조례 개정 이후 적용) = 557,321,100원

- ① 2021년 서울시 생활임금 85,610원
- ② 신청대비 적합 승인률 86.8%(2021. 5월말 기준)
- ③ 근거 조례 개정이후 지급됨을 고려하여 금액의 50%로 산정함
- ④ 대상자 15,000명: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검진신청 월평균 × 2배(2년마다 검진)

<대상자 추계 : 약15,000명>

* (서울형 유급병가 검진 현황) 2019년(6~12월) 검진자 4,368건

* 14,976명 = 624건/월('19년 검진자 월평균) × 12개월 × 2배(검진 2년 마다함을 보정)